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3
----------	------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26일

발 의 자 : 신언근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제리, 유 청, 문형주,
박기열, 김상훈, 황규복,
최호정, 강성언, 박운기 의원
(9명)

1. 제안이유

최근 들어 건축공사장 등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서장에게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토록 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 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 ----- -----.</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 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作业时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